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이동통신서비스 해지·변경 시 위약금 상한 규정 신설〉  
■ 이주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761호)

2026. 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2 |
| 1. 이동통신서비스 해지·변경 시 위약금 상한 규정 신설 ..... | 2 |

##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주희의원 등 13인

나. 발의연월일 : 2026. 4. 30.

다. 회부연월일 : 2026. 5. 4.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는 단말기 구매 지원금 약정 또는 요금할인 약정에 가입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약정에 가입한 이용자는 약정기간 만료 전에 이동통신서비스를 해지 또는 변경할 경우 위약금을 납부하게 됨.

그런데, 단말기 구매 지원금 약정의 경우 지원금이 클수록 위약금 부담이 가중되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2025년에 폐지되면서 지원금의 상한 제한이 없게 되어 위약금 부담이 더욱 늘어날 소지가 있음.

또한, 요금할인 약정의 경우 약정기간이 2년인 경우 약정기간이 1년인 경우보다 고액의 위약금을 부담하고 있어 불합리한 측면이 존재함.

이에 위약금의 상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과도하고 불합리한 위약금 관행에 따른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이동통신사업자 간의 경쟁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3 신설 등).

### Ⅲ. 검토의견

## 1. 이동통신서비스 해지·변경 시 위약금 상한 규정 신설

###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서비스를 해지 또는 변경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위약금을 부과하려는 경우 해당 위약금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3 신설 등).

| 현행                                                                                                                                                                      | 개정안                                                                                             |
|-------------------------------------------------------------------------------------------------------------------------------------------------------------------------|-------------------------------------------------------------------------------------------------|
| 제20조(등록의 취소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 제20조(등록의 취소 등) ① -----<br>-----<br>-----<br>-----<br>-----<br>-----<br>-----<br>-----<br>-----. |
| 1. ~ 4의2. (생략)                                                                                                                                                          | 1. ~ 4의2. (현행과 같음)                                                                              |
| 5. 제28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이용약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5. 제28조제1항(제32조의23제2항에 <u>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u> )-<br>-----<br>-----                              |

| 현행                                                                                                                                                                                      | 개정안                                                                                                                                                                                                                                                                                                                                                                                                                                                          |
|-----------------------------------------------------------------------------------------------------------------------------------------------------------------------------------------|--------------------------------------------------------------------------------------------------------------------------------------------------------------------------------------------------------------------------------------------------------------------------------------------------------------------------------------------------------------------------------------------------------------------------------------------------------------|
| <p>6. (생략)</p> <p>②·③ (생략)</p> <p>법률 제21499호 전기통신사업법<br/>일부개정법률</p> <p>&lt;신설&gt;</p>                                                                                                   | <p>6.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법률 제21499호 전기통신사업법<br/>일부개정법률</p> <p><u>제32조의23(이동통신서비스 해지·</u><br/><u>변경 시의 위약금) ① 이동통신사</u><br/><u>업자는 이동통신서비스를 해지 또</u><br/><u>는 변경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위</u><br/><u>약금(지원금의 반환을 포함한다.</u><br/><u>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부과할</u><br/><u>수 있다. 이 경우 위약금은 과학</u><br/><u>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u><br/><u>시하는 상한액을 초과하여서는 아</u><br/><u>니 된다.</u></p> <p><u>② 제1항에 따른 위약금의 부과를</u><br/><u>위한 이용약관의 변경에 관하여는</u><br/><u>제28조를 준용한다.</u></p> |
| <p>제51조의3(이동통신사업자 등에 대<br/>한 시정명령) ① 과학기술정보통<br/>신부장관은 이동통신사업자, 대<br/>리점 또는 판매점이 <u>제32조의11</u><br/><u>제1항 또는 제32조의15제1항을</u><br/><u>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u><br/><u>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u></p> | <p>제51조의3(이동통신사업자 등에 대<br/>한 시정명령) ① -----<br/>-----<br/>-----<u>제32조의11 제1</u><br/><u>항, 제32조의15제1항 또는 제32조</u><br/><u>의23제1항</u>-----<br/>-----<br/>---</p>                                                                                                                                                                                                                                                                                                |
| <p>② ~ ⑤ (생략)</p> <p>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p>                                                                                                                                            |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제97조(벌칙) -----</p>                                                                                                                                                                                                                                                                                                                                                                                                                  |

| 현행                                                                                                                                                                     | 개정안                                                                                                                                                                                 |
|------------------------------------------------------------------------------------------------------------------------------------------------------------------------|-------------------------------------------------------------------------------------------------------------------------------------------------------------------------------------|
| <p>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 5. (생략)</p> <p>6.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한 자</p> <p>7.·8. (생략)</p>                       | <p>-----</p> <p>-----</p> <p>-----.</p> <p>1. ~ 5. (현행과 같음)</p> <p>6. 제28조제1항(제32조의23제2항에 <u>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u>)-</p> <p>-----</p> <p>-----</p> <p>-----</p> <p>7.·8. (현행과 같음)</p> |
|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b></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위약금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2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용자가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                                                                                                                                                                                     |

##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가격 할인, 현금 지급, 가입비 보조 등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sup>1)</sup>을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해 요금할인 등 다른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고<sup>2)</sup>, 이

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7. “지원금”이란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가격 할인, 현금 지급, 가입비 보조 등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용자에게 제공된 모든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2)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1(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 ①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시 이용자 차별 해소와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원금을 받지 아니하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이용자(이동통신단말장치를 구입하지 아니하고 이동통신서비스만 가입하려는 이용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용자의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한 지원금의 차별 지급을 금지하고 있음<sup>3)</sup>.

- 또한, 현행법 및 동법 시행령은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지원금, 지원금 지급조건, 해지 또는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위약금 등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여,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음<sup>4)5)</sup>.

② 제1항에 따른 혜택의 제공을 위한 이용약관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8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28조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클 경우에는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 3)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2(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①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용자의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의 유형 및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5(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 고지 등) ①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과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 표기하여 고지 및 청구하여야 한다.

②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용약관에 따라 서비스 약정 시 적용되는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광고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할부판매하는 경우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부기간과 추가적으로 청구되는 비용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고지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 지원금, 지원금 지급 조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5)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37조의15(이동통신단말장치 계약 체결 시 계약서 명시 사항) 법 제32조의1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동통신단말장치 모델명, 출고가, 할부원금, 분할 상환 수수료 및 월 할부금 등 이동통신단말장치와 관련된 계약 내용 및 할부 조건

2. 지급 주체 및 지급 방식 등 지원금의 세부 사항

3. 이동통신서비스의 약정기간, 요금제 및 연계된 부가서비스 등의 명칭·금액

4. 요금제 또는 연계된 부가서비스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의무적인 이용기간

나. 해지 또는 변경 조건

다. 해지 또는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위약금(지원금에 대한 반환금을 포함한다)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결합 여부 및 관련 지원금의 지급 조건

가.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나. 「방송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유료방송

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라. 그 밖의 전기통신업무 및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6. 지원금과 관련한 그 밖의 결합 조건

- 이에 따라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계약을 할 때, 통상적으로 기기 구매 지원금 또는 요금할인 약정을 선택하여 가입하게 되는데, 해당 약정에는 통상적으로 약정 기간 만료 전에 이동통신서비스를 해지 또는 변경할 경우 위약금을 납부하는 조건이 포함됨.
- 그런데, 현행 위약금 제도가 과도하고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sup>6)</sup>.
- 첫째, 구매 지원금(일시금)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일부 이용자에 대해서만 과도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시장경쟁 활성화 및 이용자 혜택 증진을 위해 2025년 7월 폐지됨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대한 지원금 상한도 폐지되어 이동통신사업자들이 고액의 지원금을 경쟁적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금 약정의 경우 위약금이 지원금 전액을 기준으로 책정되어 지원금이 커지는 만큼 위약금도 비례적으로 커지는 구조로 되어 있음.

6) 2025. 12. 12. 연합뉴스 TV, "계약 해지하려니 위약금 폭탄"...이동통신 피해 주의하세요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51211151545GgO>)

###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금 약정에 따른 위약금>

- 계약기간 6개월 도과 이전 : 지원금 전액
- 계약기간 6개월 도과 이후 : 지원금 × 잔여약정기간/(약정기간 - 180일)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종전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한선 이상의 초과지원금이 음성적으로 지급되었으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이후에는 합법적으로 고액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음.
- 이로 인해 이용자의 위약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합법적 지원금”의 규모도 증대되어, 이용자의 편익을 확대하려던 취지가 오히려 과도한 위약금으로 이용자의 통신사 변경을 제한하는 Lock-in 효과로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지적임.

### < 단통법 폐지 후 지원금 규제 변화 및 위약금 산정 범위 >

| 단통법 폐지 전            |                      |              | ⇒ | 단통법 폐지 후 (25.7월~)   |        |              |
|---------------------|----------------------|--------------|---|---------------------|--------|--------------|
| “공시지원금”<br>(이통사지원금) | 사전공시 →<br>공시료 지원금 지급 | 위약금<br>산정 범위 |   | “공통지원금”<br>(이통사지원금) | 자율적 공개 | 위약금<br>산정 범위 |
| “추가지원금”<br>(유통망지원금) | 공시 15%↓ 상한           |              |   | “추가지원금”<br>(유통망지원금) | 상한 폐지  |              |
| 초과지원금               | (음성적 지원)             |              |   |                     |        |              |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둘째, 현행 요금할인 약정의 경우를 살펴보면, 그 기간에 따라 1년, 2년 약정 또는 1+1년 갱신 등의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약정기간에 따라 위약금을 산정하는 방식에 차이를 두고 있어 약정기간이 긴 경우에 오히려 위약금도 커지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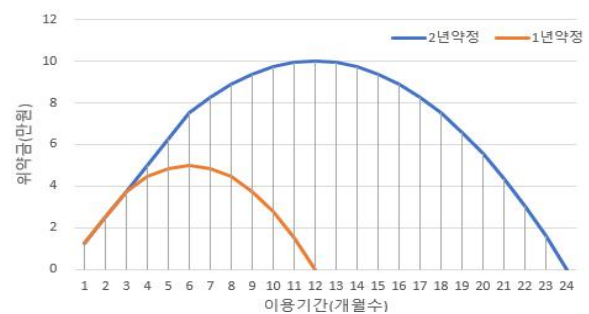
< 요금 할인 약정에 따른 위약금(예: 5만원 요금제 가입 및 25% 요금할인) >

i) 1년 약정

$$\text{위약금} = \begin{cases} \text{누적할인액} \times 100\% & (3\text{개월 이전}) \\ \text{누적할인액} \times \frac{\text{잔여약정기간}}{\text{약정기간} - 90\text{일}} & (3\text{개월 이후}) \end{cases}$$

ii) 2년 약정

$$\text{위약금} = \begin{cases} \text{누적할인액} \times 100\% & (6\text{개월 이전}) \\ \text{누적할인액} \times \frac{\text{잔여약정기간}}{\text{약정기간} - 180\text{일}} & (6\text{개월 이후}) \end{cases}$$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이 경우, 이용자가 더 장기적인 신뢰를 약속한 '2년 약정'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도 해지 시 '1년 약정' 가입자보다 훨씬 고액의 위약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이용자의 입장에서 다소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것임.
- 예를 들어, 요금 할인 약정 기간을 1년으로 맺은 이용자와 2년으로 맺은 이용자가 모두 같은 요금제로 8개월 동안 이용 후 약정을 해제할 경우, 2년 약정을 맺은 이용자의 위약금이 1년 약정을 맺은 이용자의 약 2배 규모가 됨.
- 이에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서비스를 해지 또는

변경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면서, 위약금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 개정안을 통해 부득이한 사유로 약정 만료 전 해지해야 하는 이용자가 과도한 위약금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 이동통신사업자 간 이동 장벽이 낮아져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위약금 통제가 아닌 실질적인 요금 및 서비스 품질 경쟁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위약금의 상한을 지나치게 낮게 설정할 경우 이동통신사업자들이 낮아진 이동 장벽으로 인한 중도 해지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최초 가입 시 지급하는 단말기 공시지원금 규모를 축소함으로써 오히려 소비자들의 초기 구매 비용이 상승하는 역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이동통신사업자는 이용자와의 약정기간 동안 이용요금을 받을 것을 전제로 단말기 지원금 또는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것인데, 높은 지원금 또는 할인 혜택을 받은 이용자가 위약금 상한 제도를 이용하여 받은 혜택 대비 적은 위약금을 부담하게 될 경우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계약상 급부의 불균형이

발생할 우려도 있음.

- 따라서, 이용자 편의와 이동통신사업자의 마케팅 활성화 사이의 균형을 맞춘 적정 수준의 위약금 상한 설계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둘째**, 개정안이 위약금의 부과를 위한 이용약관의 변경에 관하여 현행법 제28조(이용약관의 신고 등)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중복 입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 현행법은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서비스별로 요금 및 이용조건(이하 “이용약관”이라 함)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 또는 변경 신고 하도록 규정<sup>7)</sup>하고 있음.

- “이동통신사업자”는 이용약관 신고 또는 변경신고 의무 대상인 “기간통신사업자”에 해당하고 “위약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은 “요금 및 이용조건”에 포함되므로, 위약금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이동통신사업자는 별도의 준용규정 없이도 현행법 제28조에 따라 당연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 **셋째**, 개정안은 위약금의 상한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만 규정하고 있는데, 위약금의 상한은 이

---

7)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①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기간통신사업자는 그가 제공하려는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하여 그 서비스별로 요금 및 이용조건(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동통신사업자의 재산권, 계약의 자유와 이용자의 재산상 부담 등에 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항에 해당함.

- 따라서, 일률적으로 고시에 위임하기보다는 위약금의 상한을 설정하기 위한 방식, 기준 등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거나 최소한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규정함으로써 수범자의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넷째,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대하여 시정명령<sup>8)</sup>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이에 따른 시정명령이 있었던 경우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하여 중복 제재를 제한<sup>9)</sup>하고 있음.

- 그런데,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위약금 상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

8)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의3(이동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제32조의11제1항 또는 제32조의15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9)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전기통신사업자의 행위에 대하여 제52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거나 제53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의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부과를 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51조에 따른 조사 또는 제51조의3에 따른 조치를 명하거나 제52조의3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의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부과를 할 수 없다.

1. 제32조의11제1항 또는 제32조의15제1항을 위반한 행위. 다만, 제51조의3에 따른 조치를 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제32조의12제1항, 제32조의13제2항·제3항·제5항, 제32조의14제1항·제3항·제5항 또는 제32조의15제2항·제3항을 위반한 행위

시정명령 사유로 추가하면서 중복 제재 제한 사유로는 추가하지 않고 있어, 동일한 위약금 상한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이 중복하여 부과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위약금 상한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중복 제재 부과 제한 사유로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다섯째, 부칙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시행일을 2026년 10월 1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약금 상한에 관한 고시 제정, 이용약관 변경, 전산시스템 수정 등에 관한 준비기간을 고려할 때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하도록 하는 등 법 시행 준비를 위한 유예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다. 정부 및 관련 단체 의견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정동의

- 개정안과 같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사업자 경쟁 촉진을 위해, 이통사가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위약금의 상한을 과기정통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여 과도·불합리한 위약금 관행을 바로잡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공감함.
- 추가로, 개정안에 따르면 위약금 상한 규정 위반 시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으나 현행법상 시정명령 미이행에 대해서는 과태료<sup>10)</sup>를 부과하는 것에 그치므로, 이동통신사업자의 위약금 규정 준수 효과를 높이고, 실질적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정명령 외 경제적 제재로서 과징금 규정의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225

10) 「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제4호의8부터 제4호의21까지, 제8호, 제8호의2 또는 제8호의3에 해당하는 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8호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제5호·제6호 또는 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8의2. 제51조의3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